

#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3월13일) 상정
-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3월13일)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### □ 폐지이유

-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1996. 7. 18(조례 제1428호)자호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으나,
- 현재 우리시는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급식시설 설치가 대부분 완료되어 있는 실정으로
-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며 위원회의 운영도 비효율·비합리적인 면이 있어 폐지하고자 함

### □ 주요골자

- “ 동 조례 폐지”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신설학교 급식시설 설비는 의무조항 인가	○의무조항임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○ 학교 급식이 자체급식과, 위탁급식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급식의 경우 식단 운영이 위탁급식보다 무실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, 청소년의 체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안

제출년월일 : 2003. 3. 8  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의안번호	제97호
의결연월일	2003.3.19 (제103호)

## □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1996. 7. 18 (조례 제1428호)자로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으나
- 현재 우리 시는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급식시설 설치가 대부분 완료되어 있는 실정으로
-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며 위원회의 운영도 비효율·비합리적인면이 있어 폐지하고자 함

## □ 주요골자

“동조례폐지”

## □ 첨 부

-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(1996. 7. 18)

개정 1998. 10. 10 조례 제1603호

1999. 9. 8 조례 제1692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및 시,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사업(이하 "학교급식시설"이라 한다)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관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교급식시설대상)** 학교급식시설 대상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(이하"각급학교"라 한다)로 한다.

**제3조(위원회 구성)** ①학교급식시설 보조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국장, 학교 교육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, 부천시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인, 시의원 3인, 교육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.

**제4조(학교급식시설 보조)** ①시장은 예산안 심의요구시 학교급식시설 보조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의회에 제출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시설 보조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부천시의 학교급식 현황
2. 학교급식의 재정현황
3. 당해년도 급식지원 보조금액

#### 4. 년도별 학교급식시설 지원계획

제5조(보조신청 및 지급) ①시장은 연도개시 10일 이내에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하며, 각급학교의 장은 연도개시 1월내에 보조신청서를 제출한다.

②보조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연도개시 2월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사업의 보조금액을 연도개시 6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제6조(검사)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1996. 7. 18 조례 제142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10 조례 제160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9. 8 조례 제169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